

제 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성명: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생년월일: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상호: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
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
6. 영업의 기간: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 120g/m²]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 ----- ----- ----- ----- ----- ----- ----- ----- ----- ----- ----- ----- <u>.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u>

② (생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생략) 2. <u>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u> 3. ~ 5. (생략) <u><신설></u>	<u>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u>----- ----- ----- ----- ----- 3. ~ 5. (현행과 같음) 6. <u>영업의 기간 :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된다.</u>
---	---